협동조합은 이사(임원) 수를 최소 7명 이상*으로 규정한다. 반면, 주식회사는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의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규정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8조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임원을 다르게 규정한다. 협동조합은 전무, 상무 등과 같은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으로 하지 않지만, 주식회사는 이들을 임원에 포함한다*. <한국경제>의 기사 중 "새마을금고 임원 1.4만 명"이란 수치에는 전무와 상무가 미포함된 수치이고, "KB금융 임원 41명"은 전무, 상무, 부문장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임원이 기준이 다르다.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19조(임원과 직원) 금고의 직원으로서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제2조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협대신문> 취재 결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92%는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 임원'*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법 제18조 10항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